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관련 안내(2023.03)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의 개념

구분	업무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예시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등	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등
이전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내)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
이전 방법	원칙: 위탁사실 공개 예외: 위탁사실 고지(마케팅 위탁)	원칙: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관리·감독 의무	위탁자	제공받는 자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및 수탁자 부담	제공받는 자 부담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동남보건대학교)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업체)

※ 참고자료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12)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 지침자료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관련 안내

-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계약 시 정보주체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위탁업체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대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업체를 공개함(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

Q2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을 뿐 별도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매년 7월 쯤 행정부서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현황을 파악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관련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영역 수준진단 증빙자료

2.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조사 보고서
- 업무 위탁 문서(위·수탁 계약서, 협약서 등)

2.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후 수탁자 대상으로 교육 및 감독을 이행하고 있는가?

- ① 위탁업체 대상 교육결과 보고서
- ② 위탁업체 대상 관리, 감독 결과 보고서
- ③ 위탁업체 자체 교육결과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